

구분	내용
인력	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• 연구전담요원의 수 소기업 3명(3년 미만 2명), 중기업 5명,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7명, 대기업 10명 이상 → 벤처기업 2명 이상
	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• 창작전담요원의 수: 일반 10명, 중소기업 5명 이상 → 벤처기업 3명 이상
	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• 임직원 → 기술·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, 대학, 연구기관, 벤처기업이 주식의 30%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
	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• 일반기업 10%, 상장법인 20% → 벤처기업 50%
광고	TV·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% 할인, 정사가 기준 35억원(105억/3년) 한도 TV·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(택 1): TV 최대 50% · 라디오 최대 70% 지원 • 대상: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
인증마크	

※ 본 우대제도는 대표적인 제도만을 안내하고 있으며, 세부적인 혜택에 대한 절차 및 내용은 관련 법령 조문 및 제도운영 기관에 확인이 필요 (특히 세제혜택 관련 문의는 관할 세무서나 구청세무과에 문의하시면 상세한내용 안내 가능)

■ 신청방법

구분		내용			
확인결과 안내기간		접수완료(수수료 납부)일부터 45일 이내 소요			
기업	확인기관	전문평가기관	벤처기업확인위원회	확인기관	
신청	접수	평가	심의	확인서 발급	
신청방법		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(www.smes.go.kr/venturein/)을 통한 온라인 신청			

■ 문의처

-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(smes.go.kr/venturein/)
- 벤처기업확인기관 상담센터 ☎ 1566-6487

인증지원
인증 신기술(NET) 인증제도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,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을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 조성 신청시기: 1,2,3분기 지원대상: 대·중견·중소기업 전담기관: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

■ 지원대상

- (신기술 인증대상)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시행령 제18조2
 -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(이하 "실증화 시험")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향후 2년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
 -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
- (신청자격)
 - 신기술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, 대학, 연구기관의 대표(장)

■ 지원내용

- 국가 및 공공기관 등 구매지원
 - ① (신기술 적용제품의 수의계약 지원) 국가계약법,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대상
 - ② (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)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
 - ③ (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) 창업기업 및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의 우선

구매 지원

- ④ (우수조달제품 지정 지원) 성능·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
- ⑤ (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)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 또는 입찰에 참여하고, 협력기업은 계약에 일부를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
- ⑥ (성능인증(EPC) 제도) 성능인증제품에 대해 우선구매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 부여
- 정부 인력지원사업 신청시 우대
 - (전문연구요원제도) 석·박사 등 병역의무로 인한 연구경력의 단절없이 지속적으로 연구기회를 부여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
- 혁신형 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 우대
 - (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(혁신창업사업화 자금/개발기술사업화 자금 지원))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을 대상으로 직접대출 및 성장공유형 융자
-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(차세대 세계일류상품)
 - 최근 3년 이내에 NET·NEP 인증기업 대상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신청 가능
- 산업기술진흥 유공(신기술상용화) 정부포상
 - NET·NEP 개발기업 중 신기술실용화에 공이 큰 기술인을 대상으로 산업훈장, 산업포장, 대통령 표창, 국무총리표창 등 포상 수여(산업통상자원부, 행정안전부)
- 정부 및 지자체 R&D, 수출지원, 홍보지원 사업 신청시 우대
- (신청분야)
 - 6개 기술분야 24개 전문분과위원회로 구성

전기/전자	전자제품, 전자부품, 산업전자, 전기기기
정보통신	통신/시스템 H/W, 시스템 S/W, 응용 S/W, 정보기술 S/W
기계/소재	수송기계, 자동화기계, 일반기계, 정밀기계, 기계요소부품, 금속재료, 세라믹재료
건설/환경	대기/폐기물, 수질/토양, 건설구조/시설, 건설재료
화학/생명	의약/생명, 정밀화학, 고분자/섬유

원자력/ 신재생에너지

원자력, 방사선, 신재생에너지

문의처

- 신기술인증 홈페이지 (netmark.or.kr)
-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(☎ 02-3460-9022, 9023, 9179)